예 산 총 칙

제1조 :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세입.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 도 액
계		366,051,854	10,981,556
1. 일 반 회 계		356,715,267	10,701,458
2. 특 별 회 계		9,336,587	280,098
	의 료 보 호 기 금	820,842	24,625
	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2,037,992	61,140
	주 차 장	5,179,414	155,382
	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	230,002	6,900
	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	589,280	17,678
	기 반 시 설 사 업	93,982	2,819
	지 하 수 관 리	385,075	11,552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000,000천원이다.

제6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977,712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